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2071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20713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가단128685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만석

변론 종결 2021. 9. 9.

판결 선고 2021. 11. 18.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가단12868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51,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51,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박창우

판사김한철

별지